

의안번호	제451호
의결 연월일	2009년 12월 일 (제285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09년 12월 7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1
----------	-----

제출연월일 : 2009년 12월 7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집중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직급채정 협의 (3급,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의됨에 따라 해당 직급의 증원과
-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직 증원 및 기능직 처우개선 등을 위해 정원의 총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 정원의 총수 조정 : 2,794명 → 2,792명 (감 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39명 → 1,437명 (감 2명)

- 감 2명 : 일반직 +5명, 기능직 △7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는 변동 없음.

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 기능직 공무원

구분	총정원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행	260명	<신설>	5%이내	13%이내	19%이내	32%이내	31%이상
조정	253명	1% 이내	6%이내	16%이내	19%이내	32%이내	26%이상
증감	△7	+1%	+1%	+3%	변동없음	변동없음	△5%

- 별정직 공무원

구분	총정원	4급상당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현행	21명	5%이내	20%이내	48%이내	15%이내	10%이내	2%이상
조정	21명	5%이내	24%이내	44%이내	15%이내	10%이내	2%이상
증감	변동없음	변동없음	+4%	△4%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③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 : 1,065명 → 1,068명 (증5명)

- 3급 증 1명 (8명 → 9명) ※ 본청 3급 +1 (7명 → 8명)

- 5급이하 증 4명 (994명 → 998명)

○ 별정직 : 총정원 변동 없음. ⇨ 5급+1명(4명→5명), 6급△1명(10명→9명)

○ 기능직 : 260명 → 253명 (감7명)

○ 연구직 : 총정원 변동 없음.⇨연구관+1명(21→22명), 연구사△1명(117→116명)

※ 지도직, 소방직, 교육공무원은 변경사항 없음.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794명”을 “2,79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39명”을 “1,437명”으로 한다.

별표2 중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1%이내	6%이내	16%이내	19%이내	32%이내	26%이상

5.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5%이내	24%이내	44%이내	15%이내	10%이내	2%이상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직급정원) 본청의 정원 중 3급 1명(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의 존속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분 청	의 회	직속기관	사 업 소
총 계	2,792	-			
정 무 직 계	1	1			
도지사	1	1			
일 반 직 계	1,070	-			
2~3급	1		1		
3급	9	8		1	
3~4급	1	1			
4급	61	44	7	4	6
5급이하소계	998	-			
별 정 직 계	21	-			
1급 상당	1	1			
5급상당이하소계	20	-			
연 구 직 계	138	-			
연 구 관	22			19	3
연 구 사	116	-			
지 도 직 계	24	-			
지 도 관	6			6	
지 도 사	18	-			
소 방 직 계	1,243	-			
소 방 정	10	2		8	
소방령이하	1,233	-			
교육공무원계	42	-			
총 장	1			1	
교수·부교수·조교 수·전임강사	30			30	
조 교	11	-			
기 능 직 계	253	-			

※ 연구관, 지도관, 교수 등은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794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39명</u></p> <p>2. ~ 4.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792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37명</u></p> <p>2. ~ 4.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취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생략)